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서

	사업장 명칭		
도급인	소재지		
	업종		주요 생산품
	대표자		근로자 수
	사업장 명칭		
수급인			
	소재지		
	업종		주요 생산품
	대표자		근로자 수
	니並사		근도사 구
 도급공정		도급계약기간	
		도급승인기간	
 비고			
-1-T-			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8조, 제5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급을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고용노동청(지청) 장 직인